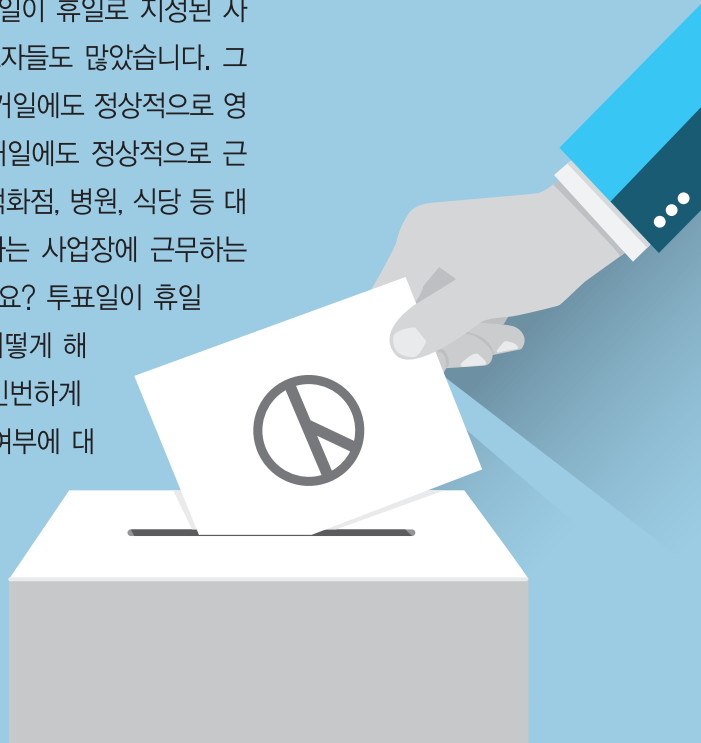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 5월은 유난히 기념일이 많은 달이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인해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 투표일이 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월요일 연차휴가를 내고 연휴를 즐기는 근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업장 등을 보면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거일 근무는 위법할까요? 백화점, 병원, 식당 등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요? 투표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피선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 때가 되면 항상 포털 사이트 상담란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질의인데요, 이번호에서는 선거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휴일이란

휴일이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법령 또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법정휴일이라고 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 1)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칭 법정공휴일이라고 언급하는 달력

상 빨간 날로 표기된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로 일반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해당 사업장의 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28호, 2013.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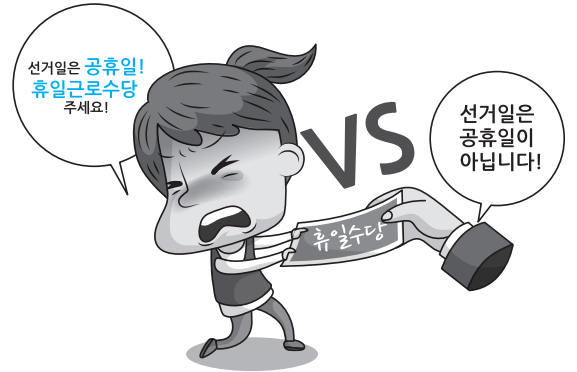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선거일이 휴일인지 여부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관계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는 법정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수 기업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법정공휴일),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을 회사 휴일로 규정함으로써 선거일을 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이 휴일로 약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일반사업장까지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근기 01254-2018, 1992-12-14)

[회 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이 있으면 휴일로 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이 당연히 휴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로 정한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역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3.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근로자들의 정치적 참정권 보장은 ?

해당 사업장 업무특성에 따라 선거일을 휴일로 부여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할 시간은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공민권이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의회의원, 기초



선거일을 회사 휴일로 규정한 사업장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



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비롯하여 기타 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즉, 선거일 등이 휴일이 아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출·퇴근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투표행위를 함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공민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관련 법령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외에 공직선거법 제6조의 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3항에서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하겠습니다.



4. 공민권 행사에 참여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열람 또는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4.2.13>

-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5. 선거일이 휴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선거일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휴일로 이를 보장해줄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률로 취업규칙 등에 근로기준법을 상회하여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선거일을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안 되므로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제도 등으로 인해 타 선거에 비해 투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선거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납기 등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정상출근해서 근무하다 보니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휴일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가 투표를 이유로 출·퇴근시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따라서 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은 별론으로 하고 휴일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 전에 출·퇴근시간대를 조정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자유로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용자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www.theonehr.co.kr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파트너 노무사, 경영컨설턴트 **홍수경**

Tel : 02-3482-3200 Fax : 070-8875-3200 Mobile: 010-2313-0757

(0619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봉타워 7층 (135-839)